

충청북도 수산생물 방역교육 민간위탁 동의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산업경제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수산생물 방역교육 민간위탁 동의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4년 10월 2일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10월 2일

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(내수면산업연구소)는 「수산생물질병 관리법」 제38조에 따라 도내 수산생물 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수산생물 질병의 방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,
- 해양수산부에서는 「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제4항 등에 따라 (사)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등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각 시·도에서 수산생물 방역교육을 실시하도록 함
- 이에,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 등에 따라 수산생물 방역교육을 민간위탁하는 사항에 대해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대상사무 : 충청북도 수산생물 방역교육
- 위탁기간 : '25. 1. ~ '25. 12. (1년)

- 위탁기관 : (사) 대한수산물질병관리사회 등
- 선정방법 : 수의계약(지정)
  - 해양수산부에서 방역교육 위탁기관 지정
- 위탁금액 : 9,000천원(국비 50%, 도비 50%)
  - 산출근거

항목	금액(천원)	산출근거	비고
합계	9,000		
강사료	1,490	- 1급강사: 200,000원(1시간)×1인×3회 - 2급강사: 150,000원(1시간)×1인×3회 - 보조강사: 110,000원(3시간)×2인×2회	
인건비	2,520	- 교육관리자, 전산입력요원, 홍보요원	방역교육 시행규정 별표3
운영비	4,100	- 교육장소 대여, 교재편찬비, 다과비, 사무· 전산용품, 우편료 등	
위탁관리비	890	- 전산관리비, 교육프로그램개발비 등	총사업비 10% 이내

- 위탁내용 : 도내 수산생물 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수산생물  
방역교육 실시(연 2회\*)

\*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-42호 「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  
교육 실시요령」 제5조(교육실시 등)에 근거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제출배경

- 수산생물 방역교육은 수산생물 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교육을 통해 어업인의 방역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,
- 이를 「수산생물질병 관리법」 제3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행정절차를 준수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내용 검토

- 「수산생물질병 관리법」 제38조(방역교육) 제1항에 따르면, “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 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게 수산생물 질병의 방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, 방역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” 고 되어있으며,
- 같은법 시행령 제19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에서는 방역교육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또는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또는 대한수의사회에 위탁하도록 되어있음

## □ 수산생물질병 관리법

###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~ ② (생략)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 □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

제19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④ 해양수산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시료채취에 관한 업무,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역교육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,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또는 「수의사법」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에 위탁한다.

## □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

### [해양수산부 고시 2021-42호]

제3조(교육 위탁기관) ① 방역교육은 「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제4항에 따라 양식어업인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,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또는 대한수의사회에 위탁 실시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위탁기관은 별표의 강사인력 확보 및 시설장비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.

- 또한, 해당 사무는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제3호에 따른 ‘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’에 해당하며,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」 제4호에 따라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므로, 사무의 민간 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

## □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

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구되는 사무
-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되는 사무**
4. 그 밖에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사무

제5조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사무 소관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충청북도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## □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

제4조(자격제한)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목적·성질·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의 범위안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
### 라. 종합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5조<sup>9)</sup>에 따라 충청북도 수산생물 방역교육 민간위탁에 대한 충북도의회 의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,
- 상위 법령과 관련 조례 등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위탁기관을 선정하며, 관련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음

9)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」 제5조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사무 소관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충청북도의회(이하 “도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도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4회차 계약부터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- 다만, 법령에 따라 지정된 수탁기관에 사무를 재위탁하는 것이므로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10조<sup>10)</sup>에 따라 성과평가 결과 그 밖의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적정여부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

---

10)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」 제10조(재계약·재위탁)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사무를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, 위탁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  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및 그 밖의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